# 혼합기에 감김

## 재 해 개 요

'15. 9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혼합기의 돌기 부분에 작업복 하의 벨트가 감겨 사망한 재해임

#### 재 해 상 황 도



기인물 : 혼합기

재해상황도

### 재해발생상황

- 혼합기 주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회전하는 돌기 부분에 하의 벨트가 감겨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
  - ※ 기인물 : 혼합기(컬러 텀블러 믹서)

- 제조사: ○○산업(한국) - 설치년도 : **2**007년

- 분당 회전수 : 약 20 rpm - 크기 : W170cm x L80cm x H140cm

○ 회전하는 혼합기 호퍼의 구동 모터는 정격용량 2HP, 분당 회전수는 20rpm로 작동하였음

## 재해발생 원인

- 혼합기의 회전부위 주변 방호조치 미실시
- 회전하는 호퍼 부위에 덮개, 울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음

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혼합기 회전부위 접근 방호조치 실시
- 혼합기를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나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## 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-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⑧ 사업주는 분쇄기·파쇄기·마쇄기·미분기·혼합기 및 혼화기 등(이하 "분쇄기 등"이라 한다)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